

## ◎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195호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3년 09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#### 1.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

- 가. 공시대상 :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
- 나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23년 6월 1일
- 다. 공동주택 수 : 128,023호 (아파트 11,624호, 연립 4,405호, 다세대 11,994호)
- 라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, 호수, 면적, 가격  
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·군·구에서 열람)
- 마. 열람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

#### 2. 이의신청 방법

- 가.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
- 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,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

#### 3.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

공동주택가격 공시(처분)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